##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655 발의연월일: 2025. 6. 2.

발 의 자:김용태·정성국·김재섭

박덕흠 • 이종배 • 조경태

임종득 • 서천호 • 주호영

이달희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에서는 대형 산불 발생에 대비하여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통해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산림청 등에서는 산불진화용 압축에어로졸을 비롯한 소화탄 개발에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

산불진화용 소화탄은 화약류의 폭발력을 이용하여 진화약제를 분사하는 것으로, 2016년에 개발된 이후 계속되는 고도화 작업을 진행해왔으나 현행법상 과도한 규제에 묶여 있어 목적에 맞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대형 산불 발생 등 긴급한 상황에서 화재 진압용으로 개발된 소화탄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행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제도 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2조제3항제3호카목 및 제3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카목을 타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산불 등 화재 진압용(鎭壓用) 소화탄(消火彈)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조제3항제3호카목의 산불 등 화재 진압용 소화탄으로서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4조, 제 4조의2 및 제5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제2조(정의) ① • ② (생 략)       | 제2조(정의) ① • ② (현행과 같              |  |  |
|                           | 음)                                |  |  |
| ③ 이 법에서 "화약류"란 다음         | ③                                 |  |  |
| 각 호의 화약, 폭약 및 화공품         |                                   |  |  |
| (火工品: 화약 및 폭약을 써서         |                                   |  |  |
| 만든 공작물을 말한다. 이하 같         |                                   |  |  |
| 다)을 말한다.                  |                                   |  |  |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
| 3. 화공품                    | 3                                 |  |  |
| 가. ~ 차. (생 략)             | 가. ~ 차. (현행과 같음)                  |  |  |
| <u>&lt;신 설&gt;</u>        | 카. 산불 등 화재 진압용(鎭                  |  |  |
|                           | 壓用) 소화탄(消火彈)                      |  |  |
| <u>카.</u> (생 략)           | <u>타.</u> (현행 카목과 같음)             |  |  |
| ④ ~ ⑦ (생 략)               | ④ ~ ⑦ (현행과 같음)                    |  |  |
| 제3조(적용의 배제) ① · ② (생      | 제3조(적용의 배제) ① • ② (현              |  |  |
| 략)                        | 행과 같음)                            |  |  |
| <u>&lt;신 설&gt;</u>        | ③ 제2조제3항제3호카목의 산                  |  |  |
|                           | 불 등 화재 진압용 소화탄으로                  |  |  |
|                           | 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  |  |
|                           | <u>안전기준에 해당하는 것에 대</u>            |  |  |
|                           | 해서는 제4조, 제4조의2 및 제5               |  |  |
|                           | 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                  |  |  |
|                           | 하지 아니한다.                          |  |  |
| <u>③</u> · <u>④</u> (생 략) | <u>④</u> ・ <u>⑤</u> (현행 제3항 및 제4항 |  |  |

과 같음)